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3
----------	-----

발의연월일: 2025. 7. 16.

발의자: 이순우, 임헌호, 남완현
차인영, 이규선, 정선희
우경란, 박현우, 이성수
최인순, 최봉희 의원
(11인)

1. 주 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한다.

2. 불신임 사유

가. 2025년 7월 3일 개최된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은 구민과 내·외빈을 모시는 의회의 대표적인 의정행사로, 의회의 위상과 전통을 기리는 자리였음. 그러나 이 행사에서 부의장 유승용 의원은 견배제의 과정 중 ‘의장이 리더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행사를 망치고 있다’는 발언을 마이크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행사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져 조기 종료되었음.

나. 해당 발언은 행사 본래 취지를 훼손한 부적절한 내용이었음. 특히 의장과 함께 의회를 대표하는 부의장이 공적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의장의 자질을 직접 거론한 행위는 참석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으며, 의회의 품격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였음.

다. 이후 7월 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부의장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유감 표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부의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의회 구성원 간 신뢰 회복과 협력 관계 유지가 어려워졌으며, 부의장으로서 요구되는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었음.

라. 의장단은 의회를 대표하는 직책으로서 그에 걸맞은 품위와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됨. 부의장은 공적지위에 부합하지 않은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하였고, 직위를 유지할 경우 의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번 불신임 추진은 단순한 발언 시비가 아니라, 공적 자리에서 의회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절차임.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른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있는 의회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나.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 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